JIPYONG LLC NEWSLETTER
법무법인(유) 지평 | 노동 뉴스레터
JIPYONG
2019년 8월 제25호

▌최신 판례 ▐

난동 취객과 언쟁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

[대상판결 : 서울고등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9누31664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

위험직무수행 과정에서 외상이 아니라 난동과 언쟁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와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관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.

A 경사는 2015년 4월 5일에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,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면서 땅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. A 경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5년 4월 7일에 사망하였습니다.

대상 판결에서는 A 경사(이하 '망인')의 사망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국가유공자법')상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.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'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하였을 것'을 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법원은 (1) 망인은 이 사건 당시 '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' 중이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'국민의 생명·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'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, (2) 망인이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해야 했던 상황은 객관적으로도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임이 명백한 점, (3) 임용 당시부터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임용된 지 5년 10개월만인 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,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법무법인[유]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&G 서대문타워 10층 T. 02-6200-1600 F. 02-6200-0800 E. master@jipyong.com
순천 | 부산 | 상해 | 호치민시티 | 하노이 | 프놈펜 | 비엔티안 | 자카르타 | 양곤 | 모스크바